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따른 투자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서 정 일*

- I. 개관
- II.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전망
 - 1. 남북교역의 전망
 - 2. 남북경제협력의 추진
 - 3.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 III. 남북교역 및 투자의 법적성격
 - 1. 법적성격
 - 2. 경제관련 법규의 연관
 - 3. 북한의 대외무역관련제도
 - 4. 남한의 남북 교류협력관련 법체계
- IV. 결론

I. 개 관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남북한 교역의 개방과 남북한 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간주하는 1988년 7월의 “대통령특별선언”과 그 후속조치로서 1988년 10월의 “남북물자교류지침”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주요절차 및 지원시책 등을 정하여 교역을 효율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함으로써 남북교역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며, 남북교역의 기본 방향은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이익추구보다는 남북쌍방의 장기적인 공동이익을

* 대한상사중재원 전문위원

지향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91년말에 이루어진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교류협력분야의 남북한 합의사항으로, ① 직교역과 직접교역 체결 ② 각종 육·해·공로의 연결 ③ 물자교류에 관한 무관세 ④ 청산결제방식으로 대금결제 ⑤ 관문점을 통한 우편, 통신 및 연결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간접교역이 주종을 이루던 남북간의 경제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수 있게 되었다.

1992년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3개 부속 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합의서 실천 기구인 화해, 군사, 경제·사회문화 등 4개 분과위원회를 1992년 11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고있다. 1992년에 활기를 띄었던 남북교역(1.7억 달러)은 1993년 들어 핵문제등 경제외적인 문제로 인해 1992년 수준을 밑돌았으나 우리기업들은 남북교역 활성화와 핵문제 해결후의 대북투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¹⁾

현재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침체를 탈피하기 위하여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을 통한 산업 현대화가 필수적이지만 대서방 채무문제로 서구 선진국들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도입선이 차단된 상태이고 최근 소련, 동구권의 개혁에 따른 북한의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구상무역 또한 감소하여 북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가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북한경제의 남한경제에의 흡수 내지 종속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남북교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북한이 대내적 경제여건의 악화과 국제환경의 변화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남북교류에 응해 왔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북한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한 경제교류 추진에 나서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실이다.²⁾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교역이 본격화될 경우 합작투자, 기술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관광자원의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상사분쟁이 야기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상사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남북상사중재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의 경제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면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한국무역협회, 북한경제동향, 1994.1, p.1

2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1991.10, p.24

II.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전망

1. 남북교역의 전망

남북한 교역의 어려움은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과 산업구조의 취약성에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남북한의 교역이 지나치게 정치적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에 기인한다.

남북한 직교역은 1991년 3월 남한의 천지무역상사와 북한의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간에 최초로 남한의 쌀과 북한의 무연탄, 시멘트의 물자교환방식의 직교역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남북한 경제교류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91년 하반기 이후 대북교역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남북한은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홍콩, 중국, 일본 등을 통한 중개무역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근래에는 간접교역방식이나 직교역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정부에서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합작투자,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이 유효하게 결합될 수 있는 사업, 관광사업 등의 시범사업 추진을 허용하는 입장이나³⁾ 바람직한 남북한 경제교류형태는 간접교역에서 직교역 및 임가공무역의 적극확대로 경제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남북교류협력은 직교역확대 및 위탁가공 교역의 활성화를 통해 교역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투자를 위한 여건조성은 남북한 기본합의서 정신이 존중되고 남북 경제공동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어 남북한간에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이 선행되고 난 후에야 활기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북한의 무역상사나 산업, 부존자원현황, 주력 수출상품과 국영무역 형태의 정보 부족으로 대북 교역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거래선 확보 및 교역가능품목의 발굴에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정보 개발과 정보 공개가 절실하다.

대북 교역가능품목의 발굴 및 지원으로, 정부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중 국내로의 수입선 전환 가능품목 발굴 및 고시 등을 통한 반입확대 방안을 강구하며, 반입유망 품목과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남북한간 구상무역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정부가 우선협상으로 남북한간에 직항로를 개설하고 교역물품의 판문점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장복희, 남북한 경제교류 및 합작투자에 관한 국제법상 고찰, 통일원, 1992, p 5

2.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

북한은 현재의 체제유지를 위하여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고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외무역의 확대, 합영법을 통한 합작투자의 적극유치등 개방화가 절실한 형편이다.

북한이 개방화 추세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본부족, 기술 및 생산시설의 낙후로 인한 경제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고, 북한의 지나친 폐쇄,봉쇄적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융통성을 보여야 경제기술교류가 용이하며, 권력의 승계측면에서 정치적인 기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개방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입장에 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적극적인 개방체제로의 전환, 가격기구와 사유재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시장경제 모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선별적으로 외화와 기술만을 들여오는 데 집착하고 있는 불완전한 경제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의 추진은 경제교류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금부터 추진해 나아가갈 남북한 단일 경제공동체의 형성에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⁴⁾

따라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에 있어서 남북 상호간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민족 경제 공동체라는 인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키는 국제적 요인으로는 중국의 대외개방 영향과 대외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의 합영법 제정이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모델로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 추진의 성과는 북한 개방정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지속적 경제침체와 비효율성의 문제점들을 북한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북한경제의 실상은 대외 개방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⁵⁾ 북한이 대외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경우 구체적 개방형태는 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운영은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를 유지하는 형태일 것이다.

4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p.28

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정보 제 747호, 1992, p.24

북한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북한시장의 빈약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서방 자본의 진출이 소극적이라는 데에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경제특구를 통한 지역개방이나 중계무역지로서의 위치로 수출증가의 효과와 대서방 경제협력관계의 강화를 예상할 수 있다. 1991년 북한은 동북아협력 차원에서 논의되던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참여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탈피하여 함경북도의 나진, 선봉지대를 경제특구로 설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목적아래 그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⁶⁾

북한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한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경제법을 정비하여 외국과의 경제협력 증대를 표명하였으나 북한의 경제체제의 한계에 따른 개방의지가 결여되어 있어 대북한 투자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3.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

1992년 10월 5일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은 합영법을 포괄하는 일반법적 성격으로 외국인 투자 관련 모법이 되고 있으며, 1992년 10월에 제정된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 1984년 제정된 합영법 등은 투자법체계의 중심법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은 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 전반을 규율하고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합영법과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은 각각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 기업의 설립, 운영, 해산과 분쟁처리를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법의 하위법이다.

따라서 합영과 관련하여 합영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법이 신법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1993년 1월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외국인 투자법의 하위법에 속하고 있다. 1993년 1월의 외화관리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1993년 10월에 제정된 토지임대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1993년 12월의 외국투자기업 노동 관리규정 등은 외국투자자가 북한내 기업활동에 있어서 외환사용 및 반출입, 조세, 인력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북한은 외국기업들의 투자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합영법의 개정을 하였으며⁷⁾, 1993년 11월

6 정무원 결정 제28호(1991, 12, 28)로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

23일자로 자유경제무역지대(나진,선봉)를 포함한 북한지역내 외국금융기관의 진출을 허용하는 "외국투자은행법"을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공포하였다.

북한이 1992년 10월 이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법령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제정된 외국투자은행법은, 북한이 외국은행 유치를 통하여 북한에 진출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외화 조달과 선진 금융기법 도입 등에 법제정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의 주요 특징은 외국인 투자유형의 다양화, 투자우대지역의설정, 외국인 투자에 대한 투자장려와 투자대상자의 범위확대 등으로 대별된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을 중국의 외자법령과 비교하여 볼때 아직 관계법령의 정비가 부족하며, 개방정책에 있어서 분권적 성격이 강한 중국과는 달리 중앙집권적인 통제체제를 가지고 있고, 개방을 체제개혁의 수단으로 사용한 중국과는 달리 체제유지적 외자유치 정책을 단행하고 있고, 중국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규정이 많다.⁸⁾

III 남북교역 및 투자의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에는 남북의 합의가 그 선결요건이다. 남북한의 직접교역이나 대북투자에 있어 교역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없이 물자의 반입이나 반출이 있을 수 없으며, 합작투자계약없는 북한의 합영사업을 생각할 수 없다.

국영무역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무역과 시장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은 여러모로 다른데다, 남북교역은 민족내부의 교역이라는 특수성까지 겹쳐 물자의 반입과 반출을 위한 국내절차에서부터 북한의 대외무역기구들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⁹⁾

남북교역은 순수한 국내거래도 국제거래도 아니다. 남북교역을 국내거래로 보려 할 경우 비국내

7 1994년 1월 20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합영법을 개정하였다.

8 한국수출입은행, 한은조사월보, 1993.3, p.22

9 장효상, " 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본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방안 ", 국제법학회 논총 제 35권 1호, 1990, 6, p.33

거래성 또는 국제거래성이 나타나고, 국제거래로 볼 경우 법집행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남북교역은 분단국내의 특수한 거래로서 그 자체 독자성을 가지며, 국내거래성과 국제거래성을 공유한 거래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⁰⁾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남북교역이 국내법의 규율대상이 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국내법이 적용되고, 국제법의 규율대상이 될 경우에는 국제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문은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¹¹⁾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 10항에서도 “남과 북은 물자 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¹²⁾ 남북한간의 직교역과 유사한 무역이라면, 1951년의 베를린협정에 의한 동서독간의 교역을 들 수 있다.

동서독간 교역의 법적 근거가 된 베를린협정은 비정부간 협정과 그 부속서에 근거하여 체결된 무역계약에 의해 행하여져 왔으며, 독일내 교역의 전개에 관한 원칙적 조항, 청산거래절차, 거래 품목, 신용공여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관세면제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교역을 주도한 서독의 입장은 동서독간에 단일경제권을 형성한다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었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 독일내 교역의 비관세부과 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특히 1957년 3월 25일 유럽공동체(EC)회원국들 간에 체결되어 EEC설립조약에 부속된 『Pro- tocal on German Internal Trade and Connected Problems 』 과 GATT에서 독일간의 무역이 독일내 교역(Inter- German Trade)임을 인정해 주었으며 그 특별한 지위를 보호해 주었다.¹³⁾

2. 경제관련 범규의 연관

10 제성호, “통상법에 비추어 본 남북경제교류”, 국제거래법 연구 제 3집 : 국제거래와 국내법의 역외적용, p.5

11 1991년 12월 13일자로 합의되고 1992년 2월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한 남북 합의서 제 15조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남북한 교역의 특성을 분단국내에서 행하여지는 동서무역의 특유한 형태로 보는 견해 : 장효상 교수의 『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본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방안』 P.35 참조

13 장복희, 남북한 경제교류 및 합작투자에 관한 국제법상 고찰, P.9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경제원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 간섭하여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경제법이 생겨나고 독자적인 영역의 법체계를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관계가 부정되고 시장가격기능이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국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경제가 운영되는 북한의 국가관리 경제체제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다양한 경제법 현상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법제를 우리의 경제법제와 같은 논리로 접근하거나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¹⁴⁾

북한에서의 법은 국가관리의 수단으로 인식되므로 경제법도 북한 경제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그때마다의 필요한 제도와 과업수행을 위한 내용을 부가했다. 북한의 경제법은 분야별로 체계화하거나 구분하기가 어려우나, 헌법상의 경제조항, 사회주의경제의 바탕이 되는 기본제도에 관한 법, 국가의 일원화되고 세부화된 경제 계획과 정책수행에 따른 부분적인 법령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경제활동과 경제운영에 있어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경제계획이다. 북한의 경제계획은 우리의 경제계획과 달리 생산, 소비, 투자 등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책목표와 함께 세부적인 집행사항까지도 규정하며, 이는 법령의 형식으로 채택되어 법집행과 같은 형태로 집행된다.

북한 경제정책의 수행에 따른 부분적인 법령들은, 정책이나 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생산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의 정책내용을 강조하거나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에 관한 규정들이 많다.

북한의 경제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바탕을 이루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제도에 관한 법령은 각 시기의 경제활동을 지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개별법령들이 파악되어야만 하나, 이들 법령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별적이고 세부적 법령형식으로 산재해 있어 각 법령간의 관계나 상하의 효력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기에 명백하지 않은 일면이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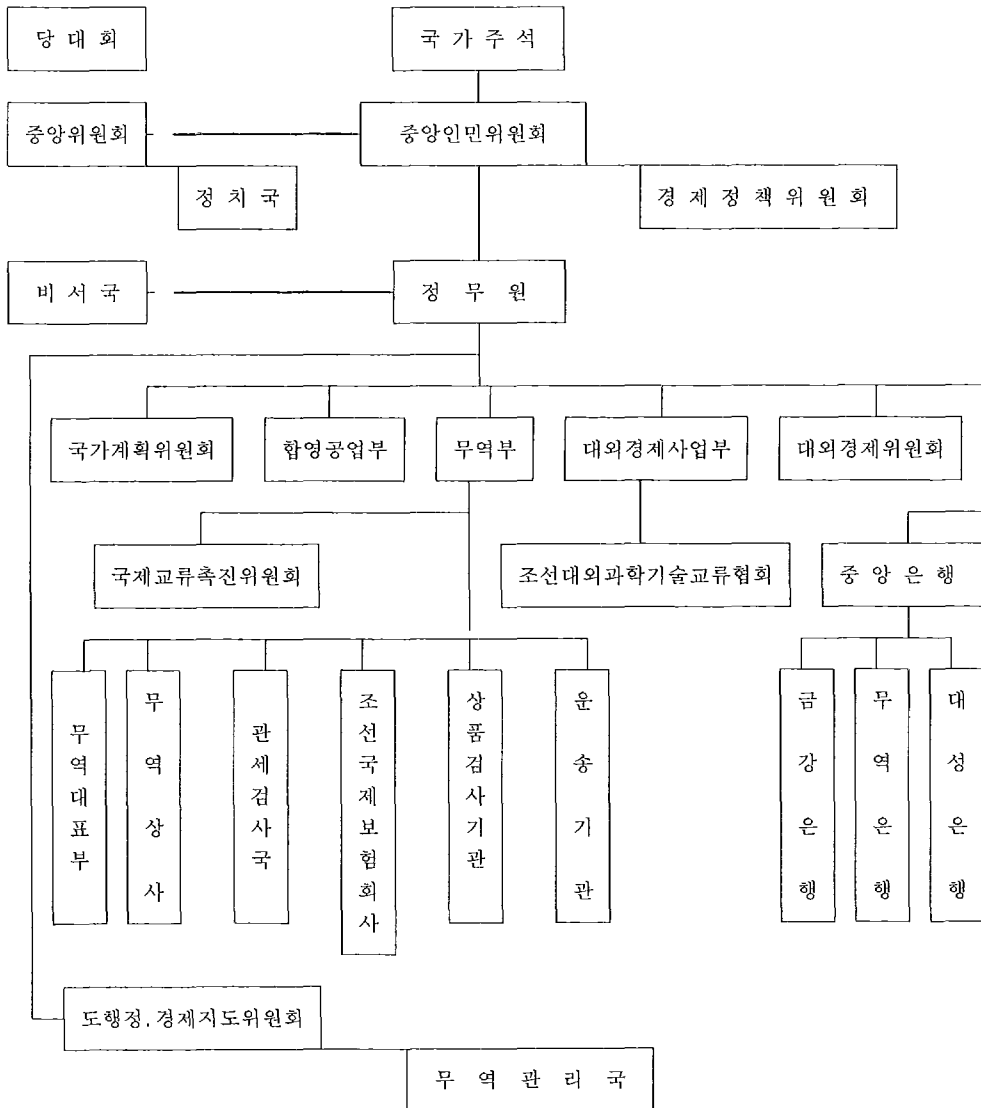
3.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제도

14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한국법제연구원, p.577

15 위의 책, P.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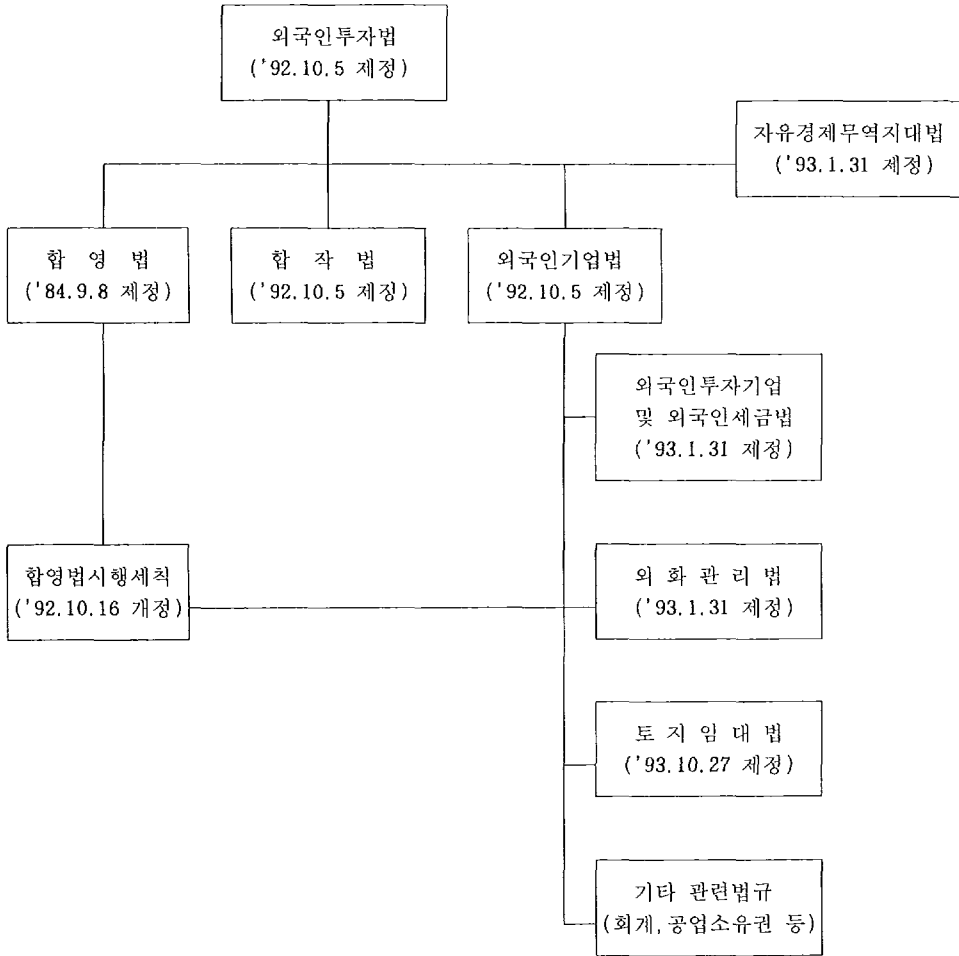
가. 무역관련기구

북한의 무역관계 기구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북한의 무역관련제도 및 무역구조, 1989 5.

나.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체계



① 외국인투자법

북한은 외국인투자법 제1조에서, "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조선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라고 규정하여 대외무역정책의 일관성을 천명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외국투자자란 북한 영역 내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하며, 외국투자기업이란 북한 영역 내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¹⁶⁾ 외국투자자는

16 외국인투자법 제2조에서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북한은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외국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장려한다.¹⁷⁾

또한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 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¹⁸⁾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특혜적인 경영활동을 보장받는다.¹⁹⁾ 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시기의 국제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²⁰⁾

북한 영역 내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한 법인체로 인정되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²¹⁾

외국투자기업의 인력확보는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기능공을 제외하고는 북한인을 채용하여야 한다. 북한인의 고용과 해고는 해당 노동 기관과의 계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상당한 제약요인이 된다.²²⁾

② 합영법

가) 합영법의 원칙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원조 감소와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1984년 9월 8일에 합영법을 제정하였다.²³⁾

본래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합영법을 제정하였으나 외자유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자 외국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합영법의 손질이 절실하게

17 외국인투자법 제7조

18 외국인투자법 제8조

19 외국인투자법 제9조에서의 특혜라 함은,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 까지 소득세를 50% 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 소득세는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이윤의 14%로 한다' 라고 규정한다.

20 외국인투자법 제12조

21 외국인투자법 제 14조

22 외국인투자법 제 16조

23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0호

되었으며, 1994년 1월 20일에 개정을 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²⁴⁾ 북한은 그 영역 안에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합영 당사자는 법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받고 평등한 부담을 지며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²⁵⁾

합영 당사자는 따로 제한이 없으며 북한 영역 밖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합영법에서 해외동포의 합영창설 조항을 설정한 것은, 같은 민족은 투자환경에 대하여 이해가 깊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용이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보인다.²⁶⁾

나) 합영대상

북한에서의 합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려하는 업종은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농업, 수산업, 건설, 운수,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 분야이다.²⁷⁾

북한에서의 합영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서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합영당사자들은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²⁸⁾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북한의 법규범과 규정을 지켜야 하며 국가에서 승인받은 업종 밖의 다른 업무활동(무역거래 포함)을 하지 못한다.²⁹⁾

다) 합영기업의 설립

합영법 및 합영법 시행세칙에 의하면 합영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 투자가는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 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의 기본 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 타산서 등을 첨부한 합영기업 설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 당사자는 화폐,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이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다. 출자액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³⁰⁾

합영 당사자는 자기의 출자 몫을 상속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도 양도 가능하다. 합영회사의 일

24 합영법 제1조에서 그 기본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25 합영법 제2조 후단에서 북한 영역 밖에서의 합영기업 창설은 합영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26 합영법 제7조 참조: 중국에서도 1981년에 「 화교 고국투자 납세문제에 관한 통지 」 기 채택되어 해외 동포가 출자한 합영기업에 세법상 유리한 혜택을 부여한다.

27 합영법 시행세칙 제3조

28 합영법 제4조, 합영법 시행세칙 제8조

29 합영법 시행세칙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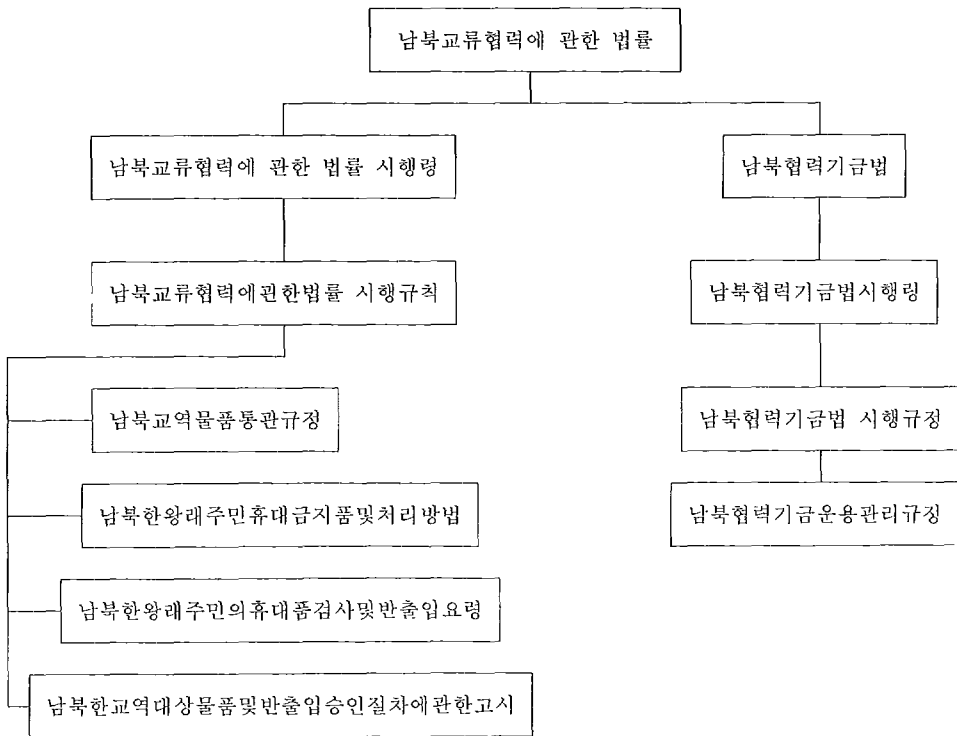
30 합영법 제11조, 합영법 시행세칙 제26조

방 당사자가 자기 출자 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³¹⁾

합작기업과 합영기업의 비교

	합 작 기 업	합 영 기 업
근거법규 법인형태 경영권 투자형식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북한의 법인(기존회사도 가능) 북한측이 생산 및 경영 공동투자(지분비가 없음) 건별계약 생산품이 중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및 시행세칙 북한의 법인(신규회사의 설립) 투자지분 및 계약에 따라(이사회) 공동투자(투자액/지분비 동일) 회사설립이 중요
승인처리기관 이윤배분 청산	신청후 50일 합작제품 배분원칙 유한책임, 투자비율에 따라 청산	규정없음 지분비에 따라 배분 북한측으로 모든 소유권이 넘어감

4. 남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체계



31 합영법 시행세칙 제38조

IV. 결 언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로 총면적 621km²의 나진·선봉지역을 자유 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고 토지임대법, 외국인투자은행법 등 외국인 투자 유치와 연관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가와의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향후 외국과의 활발한 경제협력관계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북한의 경제여건에 비추어볼 때 수출입 모두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직교역이 확대될 경우 남북경제협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남북한 기업간에 합작투자를 할 경우 합작투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체결할 합작투자계약서에 명시될 것이다.

통상 합작투자계약에는 a 합작투자가 및 합작회사의 법적 성격, b 합작회사의 명칭과 목적, 해산조건, c 합작회사의 자본금, 납입금, 발행주식의 종류 금액, d 이사회와 구성 및 합작회사의 대표권과 투표권, e 경영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분담될 방법의 상세한 기술, f 경영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 g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 또는 제3자의 주식인수권의 제한, h 중재조항 등이 명시된다.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해서는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 각종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우선적으로 관련 교역 당사자간에 자발적이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동족 상호간의 내부거래(INTER-TRADE)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남북경제교류 협력과 관련한 분쟁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중인 「남북상사분쟁의 해결방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기에 다음 기회를 통해 발표하였으면 한다.